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건설기술인
중장기 수급 전망분석 및 정책제안 마련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3. 04.

국 토 교 통 부
기 술 정 책 과

목 차

I. 용역개요	1
II. 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2
III. 주요 과업내용	4
IV. 과업 수행지침 등	6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3
VI.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16
VII. 평가방법 및 기준	17
VIII. 유의사항	19

(붙임) 제안관련 서식일람

1. 용역명 :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건설기술인 중장기 수급 전망
분석 및 정책제안 마련 연구

2. 추진배경 및 목적

- 4차산업 혁명기술 활용으로 소 산업의 디지털 전환, 시공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 등으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 중
 - 건설분야의 스마트 기술 확산과 탈현장 생산 방식의 도입 등 생산체계
변화가 추진되면서 기술인의 신(新)수요 발생 및 직무 변화가 예상
-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이탈,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기반의 생산활동 변화로 기술인 수급의 불균형 예상
 - 낮은 경쟁력으로 인식되어 건설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속도에 비해 기술 활용을 위한 전문기술인 부족 우려
- 이에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기술인의
수급전망을 분석하고 역량있는 기술인 확보를 위한 연구 필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4. 설계금액 :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의해 결정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며, 제안서(기술) 평가결과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1. 미래 건설산업 환경변화 및 기술인력 수급 현황분석

- 건설산업 내외부 환경요인 변화 분석
 - 경제상황, 인구구조변화, 기술변화, 중장기 건설 동향 전망
 - 건설산업 생산체계 변화 및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활용현황 분석
-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건설산업 전략사례 분석
 - 국내 건설기술인 수급 정책 및 전략 조사·분석
 - 해외 주요국의 건설기술인 관련 수급 정책 등 대응 전략
- 건설기술인 수급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유형별(업종, 연령, 등급 등) 수급 실태분석
 - 건설기술인 인식 조사를 통해 수급 적정성 분석 및 수급 불균형 원인 분석

2. 건설기술인 수요·공급 현황분석 및 예측모델 제시

- 국내외 건설기술인 수급 예측 모델 분석
 - 선행연구의 활용 지표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분석
 - 전문가 조사를 통한 국내외 수급 예측 모델의 적정성 분석
- 건설기술인 수요·공급 영향요인 분석
 - 건설투자, 경제성장률, 해외 건설시장 규모 등 건설기술인 수요 발생 영향지표 도출 및 분석
 - 건설분야 신규진입(관련학과 졸업생 등) 통계 등 공급 영향지표 도출 및 분석
- 건설기술인 수요·공급 예측 모델 제시
 - 건설기술인 수요·공급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모델 제시
 - 건설기술인 유입 구조에 기반한 공급 예측 모델 제시

3. 건설기술인 중·장기 수급 전망 분석

- 건설 환경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 경제성장률, 건설투자, 해외 건설시장 규모 등의 경제적 관점의 변화 시나리오 작성
 - 건설산업 생산체계 변화, 스마트 기술 적용 등 산업정책 관점의 변화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별 건설기술인 수요·공급 전망
 - 경제적·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시나리오 적용을 통한 세부 부문별 수요·공급 전망(업태별, 지역별, 등급별, 연령별 등)

4. 건설기술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환경변화 속 건설기술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 건설기술인 유입 확대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 청년층 건설기술인 유입 확대 방안
 - 건설산업 및 건설기술인 이미지 제고 방안
- 건설기술인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청년 건설기술인 활용성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지원방안
 - 건설기술인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 건설기술인 다양성(여성, 외국인) 확보 방안
- 스마트 건설 분야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 빅데이터, AI, IT 등 신기술 적용 및 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신규 직종 전망 및 공급 방안
 - 스마트 건설 영역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방안

□ 과업수행체계

1. 기존 연구 결과 또는 진행 중인 연구 활용

- 국토교통부 등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용역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상호 보완

2. 자문단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업 수행에 반영

□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과업일정계획 및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일정계획에 의거 매 익월 10일까지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 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과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청취·반영 검토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청렴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용역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책임자와 각 부문별 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보안관리

-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자필로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 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 부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도록 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업체, 전문가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과업 계약 수준의 보안대책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은 계약 후 5개월 이내로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1개월 전에 보고한다.
-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제출성과품

구 분	제 출 시 기	제 출 수 량	비 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5일 이내	10부	세부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서	착수 후 5개월 이내	30부	
최종보고서(안)	준공 1개월 전	10부	
최종보고서	준공계 제출시	100부	원본데이터(DVD 또는 USB)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구 분	월 별 추진 계획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 세부 연구계획수립										
2. 미래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건설기술인 수급현황 분석										
3. 건설기술인 수요·공급 예측모델 제시										
4. 건설기술인 중·장기 수급 전망 분석										
5. 건설기술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본 사업의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서는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PDF로 변환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작성은 과업 제안서 편철순서(별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된 작성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시된 작성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기술하고 제안 요청서에 별지서식으로 제시된 사항은 반드시 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방법에 의거 정확하고 명료하게 A4용지 30매 이내로 한글(포인트 13, 줄간격 160%)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A3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단, A3는 A4용지 2매로 적용)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증빙 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의 끝에 장을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 수 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접수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요청서 문의

○ 문 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연락처 : 044-201-3555

마.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를 결정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적격자가 없는 경우 제공고 입찰 가능)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VII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기술)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체크포인트	점수	평가방법
제안 기관 일반 현황 (20)	기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 보유 수(7점) ○ 기관 예산 규모 (3점) 	10	계량평가 주1)
	입찰참가 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여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받은 회수에 따라 적용) 	10	계량평가 주2)
과업 수행 부분 (80)	과업의 접근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성 	30	비계량 평가 주3)
	추진체계 및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산출물과 전체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적 시사점 ○ 연구 성과물 활용 	30	"
	투입인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연구인력 및 투입연구인력 평가 - 건설관련 제도, 정책 관련 연구 수행기간(책임연구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5 5	계량평가 주4) 비계량 평가 주3)
	기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0	비계량 평가 주3)
계			100	

※ 주1) 기관평가 (계량평가)

- 연구인력 보유 수 (7점)

구분	8인 이상	5인 이상	5인 미만
배점	7	4	1

* 공고일 기준으로 토목, 건축, 통계, 경영 등 전공 석사·박사급 연구인력 수

- 기관예산규모 (3점)

구분	15억 초과	10억이상	10억미만
배점	3	2	1

* 기관의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

주2) 입찰참가제한 (계량평가)

구분	0회	1회	2회이상
배점	10	5	0점

주3) 과업수행부분 (비계량평가)

항목 구분	평가 정도				
	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다소 미흡 (70%)	미흡 (60%)
과업의 접근방법	30	27	24	21	18
추진체계 및 일정	30	27	24	21	18
투입인력 평가	5	4.5	4	3.5	3
기타 항목	10	9	8	7	6

주4) 투입인력 평가 (계량평가)

- 건설관련 제도, 정책 관련 연구 수행기간 (책임연구원) (5점)

구분	10년이상	15년-10년미만	5년미만
배점	5	3	1

*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으로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관련분야 연구 수행기간

※유의사항

- 공동도급시에는 도급 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점수 산정

- 점수 : 기술능력평가득점 × 80%

2. 입찰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배점 20점)

1. 가격입찰방식(전자입찰)

- 가격입찰 방식은 전자입찰이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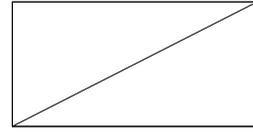
2.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청렴계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3. 보안준수 및 보안서약서의 제출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우리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보안서약서』를 입찰 참여 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1호>



과업제안서

용역명 :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건설기술인 중장기 수급
전망분석 및 정책제안 마련 연구

기관명 : (인)

<서식 제2호>

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서식 제4호>

참여 인력의 현황 총괄표

연번	담당업무	성명	연령	직위	전공	용역참여 경력건수	참여율 (%)
1							
2							
3							
4							
5							
6							
7							
8							
9							
10							

<서식 제5호>

참여인력의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학 위			
주요경력							
참 여 실 적							
수행연구용역명		용역기간 (년 월~ 년 월)		용역금액	담당업무	발 주 처	

※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가 별도 요청 시 각종증빙자료(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상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 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시 첨부
- 본 작업에 직접·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

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 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음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